

## 담배소매인 직권 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6. 12.~2026. 6. 19.
2.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3. 폐업장소 및 현황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취소일자       |
|-------|-----|---------------------|------------|
| 조은마트  | 김*열 | 노원구 동일로192길 53      | 2026.6.10. |
| 가로판매점 | 김*분 | 노원구 동일로1342(상계백병원앞) | 2026.6.10. |

### 4. 신청

가. 기간 : 2026. 6. 12.~2026. 6. 19.

나. 장소 및 일시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평일 9:00~18:00(점심시간 제외)

다.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1부.

### 5. 추천

가. 일시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유선)

나. 장소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다. 대상 : 신청자 중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천 결정

※ 국가유공자(가족) 및 장애인(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선정

라.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2116-3484)로 문의 바랍니다.